

□ 會務報告 □

제 4 차 實行 理事會 ○일시 : 1985. 3. 6 (수) 08:00~09:00

○장소 : 세종호텔 사임당홀

(협의사항)

1. 일반환자 진료수가 동결 협조공문시달

3월 1일부로 인상조정된 의료보험수가는 당초 경제기획원과 조정 협의 당시 일반환자 진료수가를 현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된 것이었으므로 정부시책에 호응하도록 회원병원의 협조를 요망하는 공문을 시달키로 협의하다.

2. 병원 약가비중조사 분석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의 진료비중 약가비중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김광연선생(고려병원)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후 우리의 약가비중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을 홍보해 나가기로 하다.

(승인사항)

1. 호주 병원협회 해외연수 선발기준

호주병원협회가 대한병원협회와 교류증진을 위해 호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우리나라 병원계 종사자 2명(의사 1, 행정 1)을 호주시드니 지역 병원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병원협회에 선발 요청한 해외연수 대상자 중 행정직 1명은 협회 사무국에서 추천하고 의사직 1명은 회원병원의 임상의사 중에서 추천키로 하고 인선문제는 회장단에 위임하다.

2. 상임이사 보선(추천)

전 상임이사 사임에 따른 보선은 관례대로 김춘규 이사 후임에 유재덕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장, 김태진 이사 후임은 조진규 경희의대 부속병원장, 이성행 이사 후임은 이태호 경북의대 부속병원장, 이현우 이사 후임은 최정수 국방부의무관리관을 각각 선임키로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받기로 하다.

제 5 차 實行 理事會 ○일시 : 1985. 3. 13(수) 08:00~09:30

○장소 : 세종호텔 사임당홀

(협의사항)

1. '8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회의 사업확대에 따른 지출예산의 증가소요는 인정되나 회원병원의 어려운 경영실태로 보아 회비를 한자리수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상정 토의된 신년도 증가 소요예산 중 협회지 발행 월 2회를 1회, 의료보험실무자 해외연수 보조금의 일부 삭감 및 매주 1회 개최하고 있는 실행이사회 경비중 거마비 전액 삭제 등으로 예산을 절감 편성하고 회비인상은 5% 내외선으로 가급적 최저선에서 조정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일괄하여 차기 상임이사회에 직접 상정키로 하다.

2. 병원표준화 및 수련교육 방향 연구검토

최근 유성에서 병원협회와 의학협회가 공동 개최한 「병원표준화 사업과 수련교육 발전을 위한 워크샵」에서 논의된 내용의 일부는 현행 병원심사제도의 변혁을 초래하고 수련병원의 어려움이 도외시 된체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등이 있었다고 사료되어 병협으로서 이에 대한 확고한 방침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므로 차기 실행이 사회에서는 전적으로 이 문제만을 상정하여 토의하기로 협의하다.
(승인사항)

1. 병원표준화 및 수련실무 연수교육 계획승인

전국 병원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85. 3. 21(금)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하는 병원표준화 및 수련실무 연수교육 계획은 사무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 6 차 實行 理事會

○일시 : 1985. 3. 19(화) 16:00~17:50

○장소 : 외교구락부 소홀

(협의사항)

1. 병원표준화 및 수련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병원표준화 및 수련교육 발전을 위한 워크샵('85. 3. 8~9)에서 논의된 표준화 및 수련교육 발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본회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각각적인 측면에서 의견 개진이 있은 다음 민병철 수련이사께서 제안한 ① 병원신임 연한의 연장 ② 심사요원의 전문화 ③ 분과학회측 의견의 수렴 반영 ④ 상설 공동연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토의 후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첫째, 수련병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매년 현지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일정수준에 도달한 병원의 신임연한을 2년내지 3년간으로 연장하여 동신임기간 중의 현지 심사는 생략하고 다만 서류심사로 가름하는 방향으로 검토.

둘째, 현 병원신임위원회는 그 구성위원수 및 성격에 비추어 세부적인 현안 문제점을 협의하기에는 규모가 방대하므로 양단체에서 각각 4명씩(병원협회 4명, 분과협의회 4명)으로 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

세째, 심사요원의 전문화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